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폐지이유

○ 폐기물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음.

○ 이에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는 관련 상위 법령과 내용이 중복되어 업무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현재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상위법의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해당 조례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성주군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8. 10. 19. ~ 2018. 11. 8.)

○ 규제심사 : 해당 없음〔기획감사실-7835(2018. 10. 5.)〕

○ 성별영향평가 : 제외(「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5. 검토의견

○ 본 폐지조례안은 폐기물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서 유명무실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 현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는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법리 검토결과,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관련 규정의 일관성 및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